살인(인정된죄명:상해치사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강요·의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[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]·위력행사가혹행위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군인등강제추행)·폭행[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]·직권남용가혹행위·폭행방조·직무유기(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:부하범죄부진정)·공갈·강요·위력행사가혹행위·재물손괴·협박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폭행·직무유기·증거인멸



[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. 10. 30. 2014고13,2014고14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찰 관】 대위 정성종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서호외 3인

【주문】

1

1. 피고인 1을 징역 45년, 피고인 2를 징역 30년, 피고인 3을 징역 25년, 피고인 4를 징역 25년, 피고인 5를 징역 15년, 피고인 6(대판:원심 공동피고인)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.

2. 다만, 피고인 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